

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(안상훈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983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9. 1.

발 의 자 : 안상훈 · 김미애 · 이소희
권영세 · 한지아 · 박상웅
김예지 · 조지연 · 고동진
이종욱 · 박덕흠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사회복지요원의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원칙적으로 해당 요원을 배정받은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장이 부담하도록 하되, 예외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업무에 복무하는 경우에만 국고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일선 복무기관에서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사회복지요원의 배정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고, 이에 따라 병역의무자가 장기대기 사유로 전시근로역으로 전환되는 등 적재적소의 원활한 요원 배치와 복무 관리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음.

이에 사회복지요원의 보수 및 여비 등에 드는 비용을 전액 국고에서 부담하도록 명시함으로써 복무기관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복지요원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(안 제31조제5항).

법률 제 호

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1조제5항 본문 중 “국가기관·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에게”를 “사회복무요원에 대한”으로, “등을 지급하여야 하며”를 “등은 전액 국고에서 부담하며”로 하고,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1조(사회복무요원의 복무 및 보수 등) ① ~ ④ (생략)	제31조(사회복무요원의 복무 및 보수 등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
⑤ <u>국가기관·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에게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하여야 하며, 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다만,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회서비스업무에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은 국고에서 부담할 수 있다.</u>	⑤ <u>사회복무요원에 대한</u> ----- ----- ----- ----- <u>등은 전액 국고에</u> <u>서 부담하며</u> ----- ----- <u>. <단</u> <u>서 삭제></u>